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6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 개월	인증 취소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